



보도 일시	2022. 12. 22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 금병욱 (044-201-6690)

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,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

- 공통 분야, 원자력,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개정하고,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(me.go.kr)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.
 -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,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,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.
 - 주요 개정사항은 △공통 분야, △원자력 연구·개발·실증,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, △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.
-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* 달성에 기여하는 ‘친환경 경제활동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,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 행위(그린워싱)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.
 - * 6대 환경목표 -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
 -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,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.

□ 이번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’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*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.

*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,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,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,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

○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, 시민사회, 학계, 산업계,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.

- ‘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·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·실증’은 녹색부문에, ‘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’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.

-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·개발·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‘동위원소 생산전용로’와 ‘우주용 (초)소형원자로’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,

-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.

○ 이 밖에 ‘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’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,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□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.

○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·개발·실증, 혁신 품목*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‘공통’ 분야가 신설됐다.

*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(22.1,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)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녹색 분류체계 경제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선별

- 또한,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(대출, 투자, 구매, 리스, 할부 등)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.
-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,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,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또한,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’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.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,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녹색분류체계 개요.
 2. 녹색분류체계 주요 신설 경제활동.
 3. 질의응답. 끝.

붙임 1

녹색분류체계 개요

- (정의)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‘친환경 경제활동’ 기준
- (원칙) 6대 환경목표(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적응,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, 순환경제로의 전환, 오염 방지 및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)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,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
 -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: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(SC; Substantial Contribution)
 -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: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(DNSH; Do No Significant Harm)
 -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: 인권, 노동, 안전, 반부패,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(MS; Minimum Safeguards)
- (구성) 2개 부문, 74개 경제활동
 - (녹색부문)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
 - ※ 재생에너지 생산,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
 - (전환부문)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
 - ※ LNG 발전,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
- (판단절차) 활동·인정·배제·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 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

항목	내용
활동기준	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
인정기준	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
배제기준	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
보호기준	경제활동이 인권, 노동, 안전, 반부패,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

※ 활동기준 충족 & 인정기준 충족 & 배제기준 충족 & 보호기준 충족 ⇒ **녹색활동**

제1절 | 녹색부문

공 | 공통

가. 산업

(1) 혁신품목 제조

① 활동기준					
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·운영하는 활동				☐	
② 인정기준					
6대 환경목표	‘붙임7.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’에 해당하는 활동인가?			택 1	
	[6대 환경목표 선택]				
	온실가스 감축	☐	순환경제로의 전환		☐
	기후변화 적응	☐	오염 방지 및 관리		☐
	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☐	생물다양성 보전		☐
③ 배제기준					
이외 환경목표	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(붙임 1~6 중)을 충족하는가?			☐	
④ 보호기준			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		☐	

(2) 혁신품목 소재·부품·장비 제조

① 활동기준					
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·운영하는 활동				☐	
② 인정기준					
6대 환경목표	‘붙임7.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’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인가?			택 1	
	[6대 환경목표 선택]				
	온실가스 감축	☐	순환경제로의 전환		☐
	기후변화 적응	☐	오염 방지 및 관리		☐
	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☐	생물다양성 보전		☐
③ 배제기준					
이외 환경목표	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(붙임 1~6 중)을 충족하는가?			☐	
④ 보호기준			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		☐	

나. 연구개발

(1) 연구·개발·실증

① 활동기준					
연구·개발·실증(RD&D; Research,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)과 관련된 제반 활동				☐	
② 인정기준					
6대 환경목표	가. 녹색분류체계 녹색분류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·개발·실증 활동인가? 또는			택 1	
	[6대 환경목표 선택]				
	온실가스 감축	☐	순환경제로의 전환		☐
	기후변화 적응	☐	오염 방지 및 관리		☐
	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☐	생물다양성 보전		☐
온실가스 감축	나.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*의 연구·개발·실증 활동인가? 또는 * 직접 공기 포집(DAC; Direct Air Capture), E-fuel, 이산화탄소의 포집·활용(CCU;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),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선박유			☐	
	다.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·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* 연구·개발·실증 활동인가? * (1) 소형모듈원자로(SMR; Small Modular Reactor), (2)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,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, (3) 사고저항성핵연료(ATF; Accident Tolerant Fuel), (4) 방사성폐기물관리, (5) 원전해체, (6) 연구용 원자로, (7) 해양용 (초)소형원자로, (8) 핵융합, (9) 내진성능 향상,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			☐	
③ 배제기준					
이외 환경목표	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(붙임 1~6 중)을 충족하는가?			☐	
④ 보호기준			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		☐	

가. 기후변화 적응

(2)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·시스템 구축·운영

① 활동기준		
태풍,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·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활동		☐
② 인정기준		
기후변화 적응	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	☐
③ 배제기준		
온실가스 감축	‘붙임1. 배제기준-온실가스 감축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‘붙임3. 배제기준-물의 지속가능한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순환경제로의 전환	‘붙임4. 배제기준-순환경제로의 전환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오염 방지 및 관리	‘붙임5. 배제기준-오염 방지 및 관리’를 충족하고 있는가?	☐
생물다양성 보전	‘붙임6. 배제기준-생물다양성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④ 보호기준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☐

제2절 전환부문

1 온실가스 감축

나. 발전·에너지

(2)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(신규건설)

① 활동기준		
전력,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,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, 열병합 발전설비, 열 생산설비를 구축·운영하는 활동		☐
※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		
② 인정기준		
온실가스 감축	가.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?	☐
	나.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?	☐
	다. 최신 기술기준* 및 사고저항성핵연료(ATF)를 적용하는가?	☐
	* 「원자력안전법」, 「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」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	
	라. 전력,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₂ eq./kWh 이내에 해당하는가?	☐
	※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'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, '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	
	마.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*하고 있는가?	☐
	*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	
③ 배제기준		
기후변화 적응	‘붙임2. 배제기준-기후변화 적응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‘붙임3. 배제기준-물의 지속가능한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	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?	☐
순환경제로의 전환	‘붙임4. 배제기준-순환경제로의 전환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오염 방지 및 관리	‘붙임5. 배제기준-오염 방지 및 관리’를 충족하고 있는가?	☐
	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?	☐
	※ 「원자력안전법」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,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등	
생물다양성 보전	‘붙임6. 배제기준-생물다양성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④ 보호기준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☐

(3)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(계속운전)

① 활동기준		
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, 열병합 발전설비, 열 생산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		☐
※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		
② 인정기준		
온실가스 감축	가.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?	☐
	나.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?	☐
	다.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(ATF)를 적용하는가?	☐
	라. 전력,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₂ eq./kWh 이내에 해당하는가? ※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'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, '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	☐
	마.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*하고 있는가? *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	☐
③ 배제기준		
기후변화 적응	‘붙임2. 배제기준-기후변화 적응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물의 지속가능한 보전	‘붙임3. 배제기준-물의 지속가능한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	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?	☐
순환경제로의 전환	‘붙임4. 배제기준-순환경제로의 전환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오염 방지 및 관리	‘붙임5. 배제기준-오염 방지 및 관리’를 충족하고 있는가?	☐
	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? ※ ‘원자력안전법’, 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’, ‘방사성폐기물 관리법’ 등	☐
생물다양성 보전	‘붙임6. 배제기준-생물다양성 보전’을 충족하고 있는가?	☐
④ 보호기준		
해당 경제활동이 기획, 건설, 운영과정에서 인권(아동노동 등), 노동(강제노동 등), 안전(중대 재해 등), 반부패(뇌물수수 등),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?		☐

1. 원전 경제활동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추진 과정은?

- ◇ 대국민 공청회(10.6) 및 각계각층*의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,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보고(12.6)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

* 국회(10~11월), 금융계(10.19), 산업계(10.19), 시민사회(10.28, 11.1), 학계(11.8)

2. 의견수렴 결과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?

- ◇ 원자력 연구·개발·실증 대상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안전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,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, 우주용(초)소형원자로는 제외하였음
- ◇ 또한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하였음

3. 향후 녹색분류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 계획은?

- ◇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'23년부터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및 교육·홍보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,
- ◇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,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.